

|  |   |   |
|--|---|---|
|  <p>교육부</p> | <h1>설명자료</h1> <p>2020. 9. 11.(금) 배포</p> |  |
|--|---|---|

**개인과의 교습자도 감염병 심각단계 상황에서  
원격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.**

- 언론사명 / 보도일시 : 조선일보(윤수정 기자) / 2020. 9. 11. (금)
- 제목 : 전국 13만명 과외 선생님 “원격수업 우린 불법, 왜죠”

**<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>**

- 교육부는 지난 3월 학원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(감염병 심각단계 또는 학교 휴업기간) 원격수업 개시를 위한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, 교습비 단가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도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.
- 이는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는 조치로, 그 대상이 학원뿐만 아니라 교습소와 개인과의교습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,
  - 한시적 조치인 만큼 학원법상 원격수업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.

